Gmail Haeyul Gugak <haeyulgugak@gmail.com>

벽면도색비용 요청에 대한 답변의 건_해율주식회사 [경영지원팀]

2개의 메일

김민화 <fan0405@naver.com> 2022년 12월 27일 오후 1:23
받는사람: haeyulgugak@gmail.com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해율 경영지원팀 담당자님~

우선,저희 아이가 귀사 학원 복도의 벽면에 손톱으로 낙서를 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교육하였으며, 두번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단단히 지도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귀사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제안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저희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벽면 도색비용: 90만원

- 하나은행 (예금주: 해율주식회사)

- 계좌번호: 831-910005-95905

2. 도색 비용 입금 완료 확인 시 24시간 내로 벽면 게시판 제거 및 추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당사 대표 명의의 안내문서 드리겠습니다.

1항. 도색비용 변상에 관한 건

제가 며칠전 귀사의 학원에 방문하여 복도에 낙서된 것들을 살펴본바, 귀 학원 복도에 저희 아이 혼자서 낙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낙서의 흔적을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변상을 하여야 한다면, 저희 아이 혼자가 아닌, 낙서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과 낙서의 정도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게다가 촬영된 영상속 제 아이는 반팔 차림으로, 영상이 촬영된 시점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상컨데 이후에 제 아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아이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에 가담한 모든 아이들이 함께 변상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이 낙서한 부분까지 모두 한 아이의 책임으로 전가 시키는 것에는 동의할수 없으며, CCTV 영상에 낙서를 하는 것이 포착된 모든 아이들에게 그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고 할 것 입니다.

2.항. 벽면 게시판 CCTV 아이 사진 부착과 관련한 건

귀사의 학원 벽면은,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상가(공공장소)의 복도에 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설치하게 되더라도 아파트관리규약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외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의 경우, 사전에 시장이나 군수등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CCTV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설치한 CCTV 부근에는 이와 같은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본 CCTV의 내용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내용으로, 그것도 낙서에 참여한 전체 학생이 아닌 특정 학생만을 지목하여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 1.항 2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자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

이후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fan0405@naver.com